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건설현장 <mark>리스크 이슈</mark>

2018. 09. 15

권 진 kjine@doosan.com



1. 터널 야간작업 제한(한국도로공사, 2014년)

2. 주52시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 '18.07.01 시행)

3. 일요일 셧다운(국무조정실, '18.7.12 보도자료)

1. 터널 야간작업 제한(한국도로공사, 2014년)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8월, 터널공사 부실시공사례,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터널 시공관리개선 대책(건설처-3582)" 수립하고, 현장설명서에 반영함.

터널 시공관리 개선 대책

문제점

- ① 24시간 연속 시공으로 인한 관리감독 한계
 - 야간 및 휴일 등 감독원 부재 시 록볼트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사례
 - 야간 안전사고 비중 높음
- ② 감독업무 과다 / 객관성 부족
 - 감독원 특성에 따라 지보패턴 판정이 달라짐
- ③ 터널 주요자재 관리 부실 자재 전수검수 어려움

개선대책

- ① 터널 일일작업시간 단축
 - 시공시간제한: 07시~22시 (야간시공금지)
 - ※ 단가반영:24h/3교대 → 16h/2교대
 - 공사기간 연장
- ② 터널공사 관리감독 강화
 - 터널분야 감리원 충원 / 교육
 - 막장관리시스템 구축
- ③ 터널 자재관리 개선
 - 시스템구축

운영 및 Issue

- · 공기 증가(5년 → 7년)
- 직접노무비 감소
-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 사례

Back-up. 터널 야간작업 제한에 따른 공기 및 노무비 IMPACT

터널 야간작업 제한으로, 터널 공기는 증가하였으나, 직/간접노무비는 감소되어 공사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당초

조	시작	종료	작업 시간 ^①	노임 할증 ^②	일노임 ③=①x②	시간당 작업효율 ④	일 작업량 (5=1)x(4)	노임/ 작업량 ⑥=③/⑤
Α	6:00	14:00	8	1.0	8	1.0	8.0	
В	14:00	22:00	8	1.0	8	1.0	8.0	
С	22:00	6:00	8	1.5	12	0.8	6.4	
					28		22.4	1.25

변경

조	시작	종료	작업 시간 ^①	노임 할증 ^②	일노임 ③=①x②	시간당 작업효율 ④	일 당 당=①x④	노임/ 작업량 ⑥=③/⑤
Α	6:00	14:00	8	1.0	8	1.0	8.0	
В	14:00	22:00	8	1.0	8	1.0	8.0	
					16		16.0	1.00

공사기간

일작업량⑤ 비교

22.4 / 16.0 x 100% = 140%

→ 40% 증가

노무비

단위작업량 당 평균 노임 ⑥ 비교 1.00 / 1.25 x 100% = 80% → 20% 감소

2. 주52시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 '18.07.01 시행)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

일시 | 2018. **9. 10**(월) 오전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토론회 중 주요 내용 요약

애로사항*

- ① 실정보고 위한 세부 지침 필요
- ②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 우려
- ③ 근로자 관리 문제
-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부족
- ⑤ 해외공사 진행 어려움

지원요청

- 근로시간단축관련계약업무 처리지침의세부기준 마련 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 공사금액 기준 사업 현장별 적용
-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 위한 산학관 협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격과

Back-up. 근로기준법 개정('18.07.01) 주요 내용

주요개정사항

- ① 주당 최대 근로 시간(68hr → 52hr)
- ②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22년말, 단, 18세 미만 제외)
- ③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 및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 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의무 적용
- ⑥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한도 축소 (최대 주 40시간)
 - 법적 기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110조)

세부내용

당초 (2003년 개정) 주당기준근로시간 40h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 최대 28h (연장12h+휴일16h) 법정근로시간 68h

4 가산수당 할증율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8시간 초과 +100%

야간근로(22시~06시): 50% 가산

휴일/연장+야간 시 야간수당 추가 지급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부터(6개월 유예)

50인 이상 299인 이하: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

(2018년 개)정

40h

최대 12h

52h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제외)

3. 일요일 셧다운(국무조정실, '18.7.12 보도자료)

공공부문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 ▶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휴일 휴무제' 단계적 도입
- ▶ △사업관리자 적정배치 △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대응>
- ▶혜화동 집회 등 최근 사회변화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 듣고 토론
- ▶ 전 부처가 정책 입안부터 소통까지 성평등적 관점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上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

▶ 2019년 부터 건설현장 주6일 작업

IMPACT

- ① 휴일작업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자의 주52시간 준수 가능성 향상
- ② 공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휴무가 이미 반영되어 설계변경 이슈 없음
- ③ 기존 주말작업 변화 예상
 - → 현장 공정관리 능력 중요
- ※ 건설공사 공기산정 방법
 - 공휴일 휴무 기반영
 - → 월 25일 작업 기준 적용
 - 날씨 영향을 받는 작업의 경우 가동율을 하향 적용

적용공사	가동율		
착공/인허가, 터널	82%		
토공, 가시설공, 외부작업	69%		
양생, 성토	66%		